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 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2000. 11. 13.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4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4일
- 다. 상정일자 : 제7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2000. 11. 13.)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이 관 재

가. 제안이유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소득지원 업무가 구분청으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본 조례의 불필요한 일부 규제 및 현실에 부적합한 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여 용자금 신청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용자금 대부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없이 용자대상자가 직접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 용자금의 신청자격을 "서울특별시 3년 이상, 마포구 관할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에서 "신청당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자"로 완화함. (안 제8조제1항)
- 보증인 및 담보물건 설정 관련 규정은 기금보존에 대한 책임이 수탁금융기관에 있고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함. (안 제8조제2항)
- 대부받은 가구가 상환기한 전에 마포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용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이주시에도 용자금상환에 큰 영향이 없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함.
(안 제16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의하여 주민소득지원 업무가 구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규제조항과 운용상 나타난 일부 부적합한 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이 학자금 용자신청시 동장 추천규정을 삭제하였음.

○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용자금 대부신청시 서울시 3년이상 마포구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신청당시 마포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로 규제를 완화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주민소득지원 업무가 구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추천 등의 절차를 폐지하고, 용자금 신청자격도 거주기간과 세대주로 제한했던 것을 신청 당시 거주한 자로 완화함으로써 용자금 신청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는 사료되나,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의하여 용자가 결정됨에 따른 불편으로 동조례의 개정 이유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제3항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99. 9.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용어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며, 부칙 안 제1항에 규정된 시행일은 동사무소 인력 재배치가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11. 13. 신 봉 현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4조제3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하고, 부칙 안 제1항에 규정된 시행일도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한 인력 재배치와 업무 인계인수 등을 고려할 때 마포구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의 시행일과 같이 2001년 3월 1일로 수정하고자 함.

다. 수정골자

-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정. (안 제4조제3항)
- “공포한 날”을 “2001년 3월 1일”로 수정. (부칙 안 제1항)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0. 11. 13.

제안자 : 총무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4조제3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하고, 부칙 안 제1항에 규정된 시행일도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한 인력 재배치와 업무 인계인수 등을 고려할 때 마포구청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의 시행일과 같이 2001년 3월 1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수정골자

-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정함. (안 제4 조제3항)
- "공포한 날"을 "2001년 3월 1일"로 수정함. (부칙 안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응자 대상) ① ~ ②(생략)</p> <p>③ 제2항 제3호에 의한 학자금을 응자하는 경우에는 <u>생활보호대상자</u> 및 <u>저소득층 자녀</u>로서 <u>고등학교 또는 2년제이상 대학재학생</u>으로서 <u>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u>, <u>대학생의 경우에는 응자신청 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평균 "C" 학점이상)인 자</u>로서 <u>각각 동장(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의 추천을 받은 자</u>로 하되, <u>대학입학생은 학기중 성적이 없을 경우 학교장의 추천서로</u> 같은한다.</p>	<p>제4조(응자 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u>자</u>로 각각 하되.</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4조(응자 대상)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_____ _____</p> <p><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u></p> <p>_____</p> <p><u>자</u>로 각각 하되.</p> <p>_____</p> <p>_____</p> <p>부 칙</p> <p>①(시행일) _____2001년 3월 1일_____</p>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소득지원 업무가 구분청으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본 조례의 불필요한 일부 규제 및 현실에 부적합한 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여 용자금 신청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골자

- 가. 용자금 대부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없이 용자대상자가 직접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 나. 용자금의 신청자격을 "서울특별시 3년 이상, 마포구 관할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에서 "신청당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자" 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
- 다. 보증인 및 담보물건 설정 관련 규정은 기금보존에 대한 책임이 수탁금융기관에 있고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8조제2항)
- 라. 대부받은 가구가 상환기한 전에 마포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용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이주시에도 용자금 상환에 큰 영향이 없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함.(안 제16조 제4항)

3. 개정근거 : 동기능전환 관련법규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자로서 각각 동장(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되” 를 “자로 각각 하되” 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용자금의 대부신청) ①신청당시 마포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용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대부신청에 따른 연대보증, 담보제공 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른다.

제16조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된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 (용자 대상)①~②(생략)</p> <p>③제2항제3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용자신청 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평균 "C"학점이상)인 자로서 각각 동장(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되, 대학입학생은 학기중 성적이 없을 경우 학과장의 추천서로 갈음한다.</p> <p>④~⑤(생략)</p>	<p>제4조(용자대상)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p> <p>-----자로 각각 하되-----</p> <p>④~⑤(현행과 같음)</p>
<p>제8조 (용자금의 대부신청)①서울특별시에 3년이상, 마포구 관할구역에서 2년이상 계속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8조(용자금의 대부신청)①신청당시 마포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용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p>	<p>②대부신청에 따른 연대보증, 담보제공 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른다.</p>
<p>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삭 제)</p>
<p>제16조 (용자금의 반환, 통보) ①구청장은 용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3. (생략)</p> <p>4. 용자를 받은 자가 마포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p> <p>②~③(생략)</p>	<p>제16조(용자금의반환, 통보)①(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②~③(현행과 같음)</p>